

2022년 귀속 법인세신고실무 수정사항

수정이유: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 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사전법규법인2022-343, 2022.10.13.)에 대한 예규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방법(기획재정부조세특례-214, 2023.03.06.)」에 대한 해석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수정함.

수정범위: p. 518~ p. 529

수정내용의 표시: 빨간색과 밑줄로 표시함.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감소한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증가 세액공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사항

-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액 적용방법(수도권 내에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함, 고용감소로 인한 추정세액은 고려하지 아니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시근로자수	5명	6명	7명	5명	9명
2019년 세액공제		2019년 1명 세액공제	2019년분 추가공제	㉠ 2019년분 추가공제배제	
2020년 세액공제			2020년 1명 세액공제	㉡ 2020년분 추가공제배제	㉢ 2020년분 추가공제배제
2021년 세액공제				㉣ 세액공제 불가	추가공제 불가
2022년 세액공제					㉤ 2022년 4명 세액공제

- ㉠ 2021년 상시근로자수(5명)가 2019년 상시근로자수(6명)에 비하여 1명 감소하였으므로 3차년도 2019년 분 추가공제를 배제한다.
- ㉡ 2021년 상시근로자수(5명)가 2020년 상시근로자수(7명)에 비하여 2명 감소하였으므로 2차년도 2020년 분 추가공제와 3차년도 2020년분 추가공제를 배제한다. 2022년에 비록 2020년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도 추가공제는 배제된다.
- ㉣ 2021년 상시근로자수(5명)가 2020년 상시근로자수(7명)에 비하여 2명 감소하였으므로 2021년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 ㉤ 2022년 상시근로자수(9명)가 2021년 상시근로자수(5명)에 비하여 4명 증가하였으므로 2022년 세액공제는 4명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액 적용방법(수도권 내에서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함, 고용감소로 인한 추정세액은 고려하지 아니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시근로자수 (청년근로자수)	4명 (0명)	6명 (1명)	8명 (2명)	9명 (0명)	10명 (3명)
2019년 세액공제		2019년 청년외 세액공제 청년 세액공제	2019년분 청년외 및 청년 추가공제	㉠ 2019년분 청년 외 추가공제 적용, 청년추가공제 배제	
2020년 세액공제			2020년 1명 청년외 세액공제 1명 청년세액공제	㉡ 2020년분 청년 외 추가공제 적용, 청년추가공제 배제	2020년분 청년외 추가공제 적용, 청 년추가공제 배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1년 세액공제				㉞ 2021년 1명 청년의 세액공제	㉞ 2021년분 청년의 추가공제
2022년 세액공제					㉞ 2022년 1명 청년 세액공제

- ㉞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수(9명)는 2019년 전체 상시근로자수(6명)보다 3명 증가하였으나 청년상시근로자수가 1명 감소하였으므로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상시근로자 관련 추가 세액공제를 배제한다. **이 때에도 2020년에 증가한 청년상시근로자수(1명)에 대하여 청년의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1명 × 700만원 = 700만원)과** 청년의 상시근로자 관련 추가 세액공제는 적용한다.
- ㉞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수(9명)는 2020년 전체 상시근로자수(8명)보다 1명 증가하였으나 청년상시근로자수가 2명 감소하였으므로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상시근로자 관련 추가 세액공제를 배제(2021년 2022년 과세연도)한다. **이 때에도 2020년에 증가한 청년상시근로자수(1명)에 대하여 청년의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1명 × 700만원 = 700만원)과 청년의 상시근로자 관련 추가 세액공제는 적용한다. 또한 2022년에 최초로** 세액공제받은 과세연도인 2020년 청년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도 **청년상시근로자 관련** 추가 세액공제는 배제하는 것이며, **이 때에도 2020년에 증가한 청년상시근로자수(1명)에 대하여 청년의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1명 × 700만원 = 700만원)과 청년의 상시근로자 관련 추가 세액공제는 적용한다.**
- ㉞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수(9명)는 2020년 전체 상시근로자수(8명)보다 1명 증가하였으나 청년상시근로자수가 2명 감소하였으므로 청년의 상시근로자수는 3명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청년의 상시근로자수 1명에 대한 2021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 ㉞ 2022년 전체 상시근로자수(10명)는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수(9명)보다 1명 증가하였고 청년상시근로자수가 3명 증가하였으므로 2022년 과세연도에 2021년 추가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 ㉞ 2022년 전체 상시근로자수(10명)는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수(9명)보다 1명 증가하였고 청년상시근로자수가 3명 증가하였으므로 청년의 상시근로자수는 2명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2022년 과세연도에 증가한 청년상시근로자수를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하므로 1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액 적용방법(1)(중소기업으로 수도권 내에서 상시근로자수는 변동이 없으나 청년의 나이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청년의 상시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로 가정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고용현황 직원 (갑): 2020년 1월 입사, 2021년 1월 15일 만30세, 현재까지 계속 근무 직원 (을): 2020년 1월 입사, 2022년 1월 10일 만30세, 현재까지 계속 근무				
청년 상시근로자수	0명	2명	1명	0명
청년의 상시근로자수	0명	0명	1명	2명
전체 상시근로자수	0명	2명	2명	2명
2020년 세액공제		2020년 청년 2명 세액공제(2,200만원)	㉞ 2020년분 청년 추가공제 배제 ㉞ 청년의추가공제	2020년분 청년 추가공제 배제 ㉞ 청년의추가공제
연도별 총세액공제		2,200만원	1,400만원	1,400만원

- ㉞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2021년부터 배제한다.**

- ㉠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2020년에 증가한 청년상시근로자수(2명)에 대하여 청년의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2명×700만원 = 1,40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 적용한다.
- ㉡ 2022년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2020년에 증가한 청년상시근로자수(2명)에 대하여 청년의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액(2명×700만원 = 1,400만원)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적용한다.
- ㉢ 2021년 및 2022년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비하여 감소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만, 추가납부세액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은 없다.

※ 추가납부세액 적용여부 판단시 상시근로자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0명	2명	2명	2명
청년외 상시근로자수	0명	0명	0명	0명
전체 상시근로자수	0명	2명	2명	2명

㉣ (저자주) 고용한 상시근로자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청년에서 청년외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청년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추가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한 최근 관련 예규(사전법규법인 2022-343, 2022.10.13.)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로 청년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1차년도에 증가한 청년상시근로자수에 대하여 청년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당초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배려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 방법(전체상시근로자수는 변동없고 청년등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기획재정부조세특례-214, 2023.03.0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액 적용방법(2)(중소기업으로 수도권 내에서 상시근로자수는 변동이 없으나 청년의 나이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로 가정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고용현황	직원 (갑): 만 29세 2020년 1월 입사, 2021년 1월 15일 만30세, 현재까지 계속 근무 직원 (을): 만 34세 2020년 1월 입사, 현재까지 계속 근무			
청년상시근로자수	0명	1명	0명	0명
청년외 상시근로자수	0명	1명	2명	2명
전체 상시근로자수	0명	2명	2명	2명
2020년 세액공제		2020년 청년 1명 세액공제(1,100만원) 청년외 1명 세액공제(700만원)	㉠ 2020년분 청년 추가공제 배제, ㉡ 청년외 추가공제	2020년분 청년 추가공제 배제, ㉢ 청년외 추가공제
연도별 총세액공제		1,800만원	1,400만원	1,400만원

- ㉠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2021년부터 배제한다.
- ㉡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2020년에 증가한 청년상시근로자수(1명)에 대하여 청년의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1명×700만원 = 700만원)과 당초 청년의 상시근로자 관련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 2022년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2020년에 증가한 청년상시근로자수(1명)에 대하여 청년의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1명×700만원 = 700만원)과 당초 청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 ㉣ 2021년 및 2022년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청년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만, 추가납부세액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은 없다.

※ 추가납부세액 적용여부 판단시 상시근로자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0명	1명	1명	1명
청년의 상시근로자수	0명	1명	1명	1명
전체 상시근로자수	0명	2명	2명	2명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 방법(전체상시근로자수는 변동없고 청년등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기획재정부조세특례-214, 2023.03.0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사전법규법인2022-343, 2022.10.13.)(⇨저자주: 동 해석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방법(기획재정부조세특례-214, 2023.03.06.)」에 대한 해석으로 삭제될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최초로 공제 받은 사업연도(2020)의 다음 사업연도(2021) 중 “상시근로자의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한 경우 2021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제1호(청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같은 조 제1항 제2호(청년외세액공제)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1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수도권 내·외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서면법령해석법인2020- 4043, 2020.12.14.)

수도권 내·외에 위치한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의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수도권 내·외 모두 증가)한 경우로서 수도권 내·외를 포함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수도

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수도권 내·외를 구분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를 적용하되, 수도권 외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증가분에 대하여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VII. 고용감소 추가납부세액(원칙)

「VI. 2.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한다.(조특령 26의7 ⑥)

 참고사항

■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사례」 2021년 7월 1일 청년 입사 후 계속 근무, 2022년 1월 5일 만30세인 생일인 청년 1명이 근무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다.(사업연도 1.1-12.31. 가정)

① 당해연도 세액공제액 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인원수
2021년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6명
2022년 (청년)	0명	0명	0명	0명									
2022년 (청년외)	1명	1명	1명	12명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한 상시근로자
청년	6명/12=0.5명	0명/12=0명	0.5명 감소
청년외	0명	12명/12=1명	1명 증가
전체	0.5명	1명	0.5명 증가

해당 과세연도의 고용증가로 인한 세액공제 적용여부를 확인하는 상시근로자수 등을 계산할 때 청년등은 시간이 경과하여 나이가 만30세를 초과하는 경우 청년상시근로자에서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변경하여 상시근로자수 등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사례의 경우 2021년 12월까지 청년이었던 근로자가 2022년 1월에 만30세이상으로 청년에서 제외되어 청년외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2022년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0.5명 감소하였으며 청년외 상시근로자는 1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상시근로자는 0.5명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2022년 고용증가로 인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고용감소로 인한 추정세액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인원수
2021년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6명
2022년 (청년)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6명
2022년 (청년외)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6명

구분	2021년	2022년	감소한 상시근로자
청년	6명 / 12 = 0.5명	6명 / 12 = 0.5명	변동없음
청년외	0명	6명 / 12 = 0.5명	0.5명 증가
전체	0.5명	1명	0.5명 증가

청년등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나이가 만30세를 초과하는 경우 청년에서 제외되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다. 이로 인하여 세액공제액이 추정되는 부당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최초 세액공제 당시 청년은 계속 청년으로 보고 고용감소여부를 판단하여 추정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1년에 비하여 2022년에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용감소로 인한 추정세액계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기준법령해석법인2021-135, 2021.08.20.)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일부 기간동안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간동안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임.

1.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 감소한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령 26의7 ⑤ 1호)

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geq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text{추가납부세액} = \left[\begin{array}{c} \text{최초로 공제받은} \\ \text{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 \text{상시근로자의 감소한} \\ \text{인원 수}^{\text{㉑}} \end{array} - \begin{array}{c} \text{상시} \\ \text{근로자의} \\ \text{감소한} \\ \text{인원 수} \end{array} \right] \times (\text{㉑금액} - \text{㉒금액}) + \begin{array}{c} \text{상시} \\ \text{근로자의} \\ \text{감소한} \\ \text{인원 수} \end{array} \times \text{㉑금액}$$

추가납부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㉑금액」 및 「㉒금액」은 기업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	수도권밖 ^㉑	수도권내	수도권밖 ^㉑	수도권내	수도권밖 ^㉑
㉑금액(청년)	400만원	400만원 (21년 22년: 500만원)	800만원	800만원 (21년 22년: 9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21년 22년: 1,300만원)
㉒금액(청년외)	0원		450만원		700만원	770만원

※ ㉑ 2021년 및 2022년 수도권 밖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였으며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함

참고사항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납부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20년	2021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021년 대비 증감여부 2022년	
	인원수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4명	4명 감소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11명	1명 증가
전체상시근로자수	10명	18명	8명 증가	15명	3명 감소

- ㉑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5명 × 1,100만원 + 3명 × 700만원 = 76,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 1,100만원 = 55,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㉒ 2022년에 상시근로자수(15명)가 2021년 18명보다 3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4명 - 3명) × (1,100만원 - 700만원) + 3명 × 1,100만원 = 37,000,000원

②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㉑ × ①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㉒ × ②금액

추가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㉑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①금액」 및 「②금액」은 기업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	수도권밖 ^㉑	수도권내	수도권밖 ^㉑	수도권내	수도권밖 ^㉑
① 금액(청년)	400만원	400만원 (21년 22년: 500만원)	800만원	800만원 (21년 22년: 9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21년 22년: 1,300만원)
② 금액(청년외)	0원		450만원		700만원	770만원

※ ㉑ 2021년 및 2022년 수도권 밖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였으며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함

참고사항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납부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20년 인원수	2021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021년 대비 증감여부 2022년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7명	1명 감소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8명	2명 감소
전체상시근로자수	10명	18명	8명 증가	15명	3명 감소

- ㉑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5명 × 1,100만원 + 3명 × 700만원 = 76,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 1,100만원 = 55,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㉒ 2022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2021년) 18명보다 3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1명 × 1,100만원 + 2명 × 700만원 = 25,000,000원

나.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text{추가납부세액} = \text{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text{㉑}} \times (\text{①금액} - \text{②금액})$$

추가납부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①금액」 및 「②금액」은 기업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	수도권밖 ^㉑	수도권내	수도권밖 ^㉑	수도권내	수도권밖 ^㉑
① 금액(청년)	400만원	400만원 (21년 22년: 500만원)	800만원	800만원 (21년 22년: 9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21년 22년: 1,300만원)
② 금액(청년외)	0원		450만원		700만원	770만원

※ ㉑ 2021년 및 2022년 수도권 밖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였으며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함

참고사항

■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20년	2021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021년 대비 증감여부 2022년	
	인원수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7명	1명 감소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12명	2명 증가
전체상시근로자수	10명	18명	8명 증가	19명	1명 증가

- ㉓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5명 × 1,100만원 + 3명 × 700만원 = 76,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 1,100만원 = 55,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㉔ 2022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1년)보다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56,000,000원**이 추가세액공제된다.
 - 청년 추가세액공제분 = 추가공제 배제(감소), **다만 1차년도 청년증가인원에 대하여 청년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하여 추가공제, 5명 × 700만원 = 35,000,000원**
 - 청년외 추가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㉕ 2022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2021년) 19명보다 1명이 증가하였으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2021년보다 1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1명 × (1,100만원 - 700만원) = 4,000,000원

2.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 감소한 경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 납부세액 = $\left[\begin{array}{l} \text{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 \text{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text{㉑}} \end{array} - \begin{array}{l} \text{상시근로자의} \\ \text{감소한 인원 수} \end{array} \right] \times (\text{①금액} - \text{②금액})$
 $\times \text{공제횟수}^{\text{㉒}} + \text{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times \text{①금액} \times \text{공제횟수}$
 -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 감소한 경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㉒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①금액」 및 「②금액」은 기업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	수도권밖 ^㉑	수도권내	수도권밖 ^㉑	수도권내	수도권밖 ^㉑
①금액(청년)	400만원	400만원 (21년 22년: 500만원)	800만원	800만원 (21년 22년: 9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21년 22년: 1,300만원)
②금액(청년외)	0원		450만원		700만원	770만원

※ ㉑ 2021년 및 2022년 수도권 밖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였으며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함

 참고사항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로 2차년도는 상시근로자수가 증가 또는 변동이 없고 3차년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19년	2020년		2020년 대비 증감여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021년		2022년	
	인원수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8명	0명 증가	4명	4명 감소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10명	0명 증가	11명	1명 증가
전체상시근로자수	10명	18명	8명 증가	18명	0명 증가	15명	3명 감소

- ㉑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5명 × 1,100만원 + 3명 × 700만원 = 76,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 1,100만원 = 55,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㉒ 2021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가 세액공제된다.
 - 청년 추가세액공제분 = 5명 × 1,100만원 = 55,000,000원
 - 청년외 추가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㉓ 2022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 18명보다 3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4명-3명) × (1,100만원 - 700만원) × 2 + 3명 × 1,100만원 × 2 = 74,000,000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로 2차년도 상시근로자수, 3차년도 상시근로자수가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19년	2020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020년 대비 증감여부			
		인원수	증감	2021년		2022년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인원수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6명	2명 감소	2명	6명 감소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11명	1명 증가	12명	2명 증가
전체상시근로자수	10명	18명	8명 증가	17명	1명 감소	14명	4명 감소

- ㉠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5명 × 1,100만원 + 3명 × 700만원 = 76,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 1,100만원 = 55,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 2021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보다 1명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2명 - 1명) × (1,100만원 - 700만원) + 1명 × 1,100만원 = 15,000,000원
- ㉢ 2022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 18명보다 4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에서 이미 추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청년의 감소인원은 최초공제연도인 2020년 증가인원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청년이 6명 감소하였지만 2020년 증가인원이 5명이므로 5명을 기준으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5명 - 4명) × (1,100만원 - 700만원) × 1 + 4명 × 1,100만원 × 1 - 15,000,000 = 33,000,000원

② 그 밖의 경우

추가납부세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 감소한 경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참고사항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로 2차년도는 상시근로자수가 증가 또는 변동이 없고 3차년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19년	2020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020년 대비 증감여부			
		인원수	인원수	증감	2021년		2022년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8명	0명 증가	7명	1명 감소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10명	0명 증가	8명	2명 감소
전체상시근로자수	10명	18명	8명 증가	18명	0명 증가	15명	3명 감소

- ㉠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3명×700만원 + 5명 × 1,100만원 = 76,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 1,100만원 = 55,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 2021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가 세액공제된다.
 - 청년 추가세액공제분 = 5명 × 1,100만원 = 55,000,000원
 - 청년외 추가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 2022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 18명보다 3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2명 × 700만원 × 2 + 1명 × 1,100만원 × 2 = 50,000,000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로 2차년도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상시근로자수 및 3차년도 상시근로자수가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19년	2020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020년 대비 증감여부			
		인원수	인원수	증감	2021년		2022년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6명	2명 감소	7명	1명 감소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12명	2명 증가	8명	2명 감소
전체상시근로자수	10명	18명	8명 증가	18명	0명 증가	15명	3명 감소

- ㉠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3명×700만원 + 5명 × 1,100만원 = 76,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 1,100만원 = 55,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 2021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보다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56,000,000원이** 추가세액공제된다.
 - 청년 추가세액공제분 = 추가공제 배제(감소), **다만 1차년도 청년증가인원에 대하여 청년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하여 추가공제, 5명 × 700만원 = 35,000,000원**
 - 청년외 추가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 2021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보다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므로 청년상시근로자수 감소분에 대하여 추가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 청년 감소분 추가납부세액 = 2명 × (1,100만원 - 700만원) = 8,000,000원
- ㉣ 2022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 18명보다 3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총 추가 납부할 세액 = 2명 × 700만원 × 2 + 1명 × 1,100만원 × 1 = 39,000,000원
 - 이미 추가 납부한 세액 8,000,000원

• 당해 사업연도 추가 납부할 세액 = 39,000,000 - 8,000,000 = 31,000,000원

「저자주」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방법(기획재정부조세특례-214, 2023.03.06.)에 대한 해석으로 인하여 고용감소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위 사례의 경우 감소한 청년 1명에 대하여 적용 받은 세액공제금액(1차: 1,100만원, 2차: 700만원)을 추가납부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감소한 청년 1명에 대한 2차 추가공제액(700만원)을 고려할 수 없어 2차 추가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 $\frac{\text{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text{①}}}{\text{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인원 수}^{\text{②}}} \times (\text{①금액} - \text{②금액}) \times \text{공제횟수}^{\text{②}}$

-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감소한 경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②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①금액」 및 「②금액」은 기업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	수도권밖 ^①	수도권내	수도권밖 ^①	수도권내	수도권밖 ^①
①금액(청년)	400만원	400만원 (21년 22년: 500만원)	800만원	800만원 (21년 22년: 9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21년 22년: 1,300만원)
②금액(청년외)	0원		450만원		700만원	770만원

※ ① 2021년 및 2022년 수도권 밖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였으며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함

참고사항

-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2차년도는 변동이 없고 3차년도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 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19년	2020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020년 대비 증감여부			
				2021년		2022년	
	인원수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8명	0명 증가	7명	1명 감소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10명	0명 증가	12명	2명 증가
전체상시근로자수	10명	18명	8명 증가	18명	0명 증가	19명	1명 증가

㉠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3명×700만원 + 5명 × 1,100만원 = 76,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 1,100만원 = 55,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2021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가

세액공제된다.

- 청년 추가세액공제분 = 5명 × 1,100만원 = 55,000,000원
- 청년외 추가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㉔ 2022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보다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56,000,000원이** 추가세액공제된다.
 - 청년 추가세액공제분 = 추가공제 배제(감소), **다만 1차년도 청년증가인원에 대하여 청년의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하여 추가공제, 5명 × 700만원 = 35,000,000원**
 - 청년외 추가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㉕ 2022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 18명보다 1명이 증가하였으나 청년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1명 × (1,100만원 - 700만원) × 2 = 8,000,000원
-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2차년도와 3차년도에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19년	2020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020년 대비 증감여부			
				2021년		2022년	
	인원수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7명	1명 감소	6명	2명 감소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11명	1명 증가	13명	3명 증가
전체상시근로자수	10명	18명	8명 증가	18명	0명 증가	19명	1명 증가

- ㉑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3명 × 700만원 + 5명 × 1,100만원 = 76,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 1,100만원 = 55,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㉒ 2021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나 청년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56,000,000원이** 추가세액공제된다.
 - 청년 추가세액공제분 = 추가공제 배제(감소), **다만 1차년도 청년증가인원에 대하여 청년의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하여 추가공제, 5명 × 700만원 = 35,000,000원**
 - 청년외 추가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㉓ 2021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와 변동이 없으나 청년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1명 × (1,100만원 - 700만원) = 4,000,000원
- ㉔ 2022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나 청년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56,000,000원이** 추가세액공제된다.
 - 청년 추가세액공제분 = 추가공제 배제(감소), **다만 1차년도 청년증가인원에 대하여 청년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하여 추가공제, 5명 × 700만원 = 35,000,000원**
 - 청년외 추가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㉕ 2022년에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 18명보다 1명이 증가하였으나 청년상시근로자수가 2명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총 추가 납부할 세액 = 2명 × (1,100만원 - 700만원) × 1 = 8,000,000원
 - 이미 추가 납부한 세액 4,000,000원
 - 당해 사업연도 추가 납부할 세액 = 8,000,000 - 4,000,000 = 4,000,000원

「저자주」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방법(기획재정부조세특례-214, 2023.03.06.)」에 대한 해석으로 인하여 고용감소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위 사례의 경우 감소한 청년 2명에 대하여 적용 받은 세액공제금액(1차: 2,200만원, 2차: 1,400만원)을 추가납부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감소한 청년 2명에 대한 2차 추가공제액(1,400만원)을 고려할 수 없어 2차 추가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